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403

발의연월일: 2024. 8. 30.

발 의 자:김영배·박홍배·이병진

김태선 · 한병도 · 김태년

이학영 · 문금주 · 전현희

문정복 · 송기헌 · 이정문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보 청기 구매 시 최대 117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, 청각 장애인이 아닌 노인성 난청 환자는 보청기 구매 시 건강보험 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음.

65세 이상인 노인 중 약 30%가 노인성 난청 환자이나, 보청기 구매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 노인성 난청 환자의 보청기 사용 비율은 12.6%로 낮은 수준임.

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보청기 구매·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(안 제51조의2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340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1조의2(노인에 대한 특례) ① 공단은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 양자에게는 보청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.
 - ② 65세 이상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를 판매한 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단은 지급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보청기를 판매한 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·방법·절차, 제2항에 따른 보청기 판매업자의 보험급여 청구, 공단의 적정성 심사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57조제1항 중 "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"를 "준요양기관·보조기기판매업자·보청기 판매자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준요양기관이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"를 "준요양기관, 보조기기를 판매한자나 보청기를 판매한자"로 한다.

제96조의4제4항 중 "청구한 자"를 "청구한 자 및 제51조의2제2항에 따

라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"로 한다.

제104조제1항제3호 중 "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"를 "준요양기관, 보조기기 판매업자 또는 보청기 판매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51조의2(노인에 대한 특례) ①
	공단은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
	피부양자에게는 보청기에 대하
	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.
	② 65세 이상인 가입자 또는
	피부양자에게 보청기를 판매한
	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
	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보험급
	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. 이
	경우 공단은 지급이 청구된 내
	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보청
	기를 판매한 자에게 보청기에
	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
	<u>다.</u>
	③ 제1항에 따른 보청기에 대
	한 보험급여의 범위ㆍ방법ㆍ절
	차, 제2항에 따른 보청기 판매
	업자의 보험급여 청구, 공단의
	적정성 심사 및 그 밖에 필요
	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
	<u>정한다.</u>
제57조(부당이득의 징수) ① 공단	제57조(부당이득의 징수) ①
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	

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·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.

② (생략)

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 고나 거짓 증명(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 증명서를 양도 · 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), 요양기관의 거 짓 진단이나 거짓 확인(제12조 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 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 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 을 포함한다) 또는 준요양기관 이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의 속임수 및 그 밖의 부당한 방 법으로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 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 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.

준요양기관·보조기기 판매
업자·보청기 판매자
② (현행과 같음)
③
준요양기관,
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나 보청
<u>기를 판매한 자</u>

- ④·⑤ (생 략)
- 제96조의4(서류의 보존) ① ~ ③ (생 략)
 - ④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 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<u>청구한</u> <u>자</u>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날 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청 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.
- 제104조(포상금 등의 지급) ① 공 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 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 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4 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- 1. 2. (생략)
 - 3.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판매업자
 - 4. (생략)
 - ② ~ ④ (생 략)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96조의4(서류의 보존) ① ~ ③
(현행과 같음)
4
<u>청구한</u>
자 및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
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
<u> 구한 자</u>
제104조(포상금 등의 지급) ①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
준요양기관, 보조기기
판매업자 또는 보청기 판매자
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간음)